

20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오염방제화공]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1개 직위, 총 1명)

● 총괄

구 분				채용예정인원(장애인(경증))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장애 1명
9급	공업	화공	오염방제화공	

● 세부선발인원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화공D	공업서기보 (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분야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오염방제화공	공업서기보	○ 해양오염 사고 방제 대응 및 해양오염 사고 예방 업무 ○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및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조사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 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 9. 18.) 기준으로 판단]

채용분야		직급별 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할 경우 응시 가능	
오염방제 (화공)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관련분야: 화공, 화학, 해양증거물 감식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 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인사담당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상근여부, 상세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예. 주 00시간)이 기재 되어야 있어야 함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 \times (20시간 / 40시간) = 2년$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 일정

구분	공고·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18.(화) / 8. 18.(화)~8. 31.(월)	'26. 9. 11.(금)	'26. 9. 18.(금)	'26. 9. 30.(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 등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 게시예정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 ① (소통 · 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 ·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 · 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 ·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양경찰 인재상 적합 및 직무 전문성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평가요소에 대해 질의·응답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6. 8. 18.(화) ~ 8. 31.(월) 18:00
- 제출방법 : 전자메일(ususu@korea.kr) 이용
 - 서류는 **[붙임 3]** 『제출서류 총괄표』를 참조하여 목록에 해당하는 PDF 파일(파일명 : 오염방제화공D_응시자 성명)을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두 가지의 서류를 한 페이지에 편집 금지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함께 제출
 - 제출 기한 내에는 등록한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기한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 **[붙임 3]**
- 응시원서: **[붙임 4]**
-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응시분야	제출서류		수량
오염방제화공	자격증	·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 경력	· (기능사)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관련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2년 이상) +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 소득금액증명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장애인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졸업증명서, 학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 5]**
-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확인서 : 해당자만 **[붙임 6]**

다. 제출 서류별 주의사항

- **(공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② 응시원서

- 1)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공업서기보(일반직 9급) / 화공D
- 2)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공란
- 6)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③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력】 : 재직(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증명 모두 제출

1) 관련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시간(상임·비상임 구분)*, 직책, 세부담당업무, 발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확인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Fax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필수 기재(예시: 주 2시간)

** 응시자 본인이 인사담당자일 경우 확인자 서명은 복수(2인) 이상의 확인 서명 필요

- 담당업무,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기관의 담당자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조회 불가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경력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 中 1종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total.comwel.or.kr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www.nps.or.kr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www.nhis.or.kr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total.comwel.or.kr

3)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공고일 기준 6개월 내 발급분)

-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귀속년도는 경력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외에 경력기간동안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공무원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2), 3) 제출 불필요

5)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中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텍스] 오른쪽 상단에  버튼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 ‘민원증명’ 카테고리내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클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즉시발급 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발급기한 설정)에서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사업자번호 확인 후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앞면, 뒷면 모두 제출)

- 1) 자격증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취득확인서’도 가능합니다.

④ 주민등록초본(상세)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체가 표기되어야 하며, 남자는 병역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⑤ 장애인 증명서(발급본만 인정, 열람용 인정불가)

⑥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 1)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해당 서류는 면접시험 평가위원 제척·기피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서명해야 합니다.
- 2) 두쪽 모아찍기 금지입니다.

⑧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1) 軍 현역 복무자 중 최종합격 이후 교육원 입교 등을 위해 입교일 전에 원활한 전역을 희망할 경우 **[붙임 6]** 「(현역)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전역 신청 내용 확인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2)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합격 이후 교육원 입교 전 전역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26년 10월 중) 이수 후 임용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적합여부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 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 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이 확정된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7 참고> 작성 후 반환 청구 가능

: '26. 9. 30.(수) ~ 10. 7.(수), ususu@korea.kr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자메일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서해지방해양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연락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288-2416,2521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 및 제6의4 규정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결격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개정·공포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지원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화공D	오염방제화공	공업서기보(9급)	장애1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오염 예방 활동 및 방제 대응 업무 ○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및 오염행위 조사·단속 ○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 방제함정 (화학방제함정) 승선 및 운항 * 장애인 모집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분야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력 등
-------	---

필요 지식	○ 해양오염 관련 법령 및 조사·단속 절차에 대한 이해 ○ 해양오염 사고 대응 및 방제기술에 관한 지식 ○ 방제장비 운용 및 현장 안전관리 역량 ○ 해양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관련분야: 화공, 화학, 해양증거물 감식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일반직 9급(오염방제화공M)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
오염방제화공(D)	※ 채용담당 기재		휴대폰) 비상연락처)

편철 순서	제출대상	제 출 서 류 명	제출여부 (O, X)	비고
1	전원	응시원서 1부	예시) O 또는 X	
2		응시자격 요건 증빙 서류		
3		주민등록 초본(상세)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군복무자 (현역자)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이제** **이제**

성명 (서명)

붙임 4

응시원서(양식)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보(일반직 9급) / 화공D	
응시자격		예) 위험물기능사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추후 관계 기관 조회 의뢰 예정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종이문서형 수입인지는 응시원서 다음으로 첨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등 채용 관련 문자가 발송되오니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응 시 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공업서기보(일반직 9급) / 화공D	
응시자격		예) 위험물기능사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일반직 9급(공업서기보) / 화공D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병역)·자격·면허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임용 결격사유,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 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 유 후 파기)
개인정보 (자격증·경력·학위 등)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 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 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 공동이용증적 보관)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본인 소속 군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 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소속 軍	공무원 채용 관리 (전역 가능 여부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군번, 계급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최종 합격 시 전역 신청·미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확인 및 동의서

(1)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군복무중인 현역 응시자에 한해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 가능 여부를 각 군 담당부서에 조회할 예정입니다.

(2) 최종합격이 결정된 현역 응시자는 각 소속 군에 규정된 전역신청절차에 따라 본인이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로 전역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전역 신청기간 내에 전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입교등록 및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차기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락처** :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736, 2436)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따라 전역 미신청이 확인될 경우 입교 등록 및 임용 포기자로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군별	군번	계급
----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귀하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